

중국의 기록물 정리분류의 원칙과 사례 분석*

A Study on the Arrangement of Archives in China

김 유 리(Yu-Ryee Kim)**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중국 제 2 역사당안관의 정리분류 사례 |
| II. 정리분류의 원칙과 내용 | 1. 민국당안의 정리분류 방침 |
| 1. 전종의 구분과 배열 | 2. 전종구성의 사례 |
| 2. 전종내 당안의 분류 | IV. 맺음말: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를 위한 시사점 |
| 3. 유별내 안권의 배열과 안권목록 | |

초 록

중국에서는 기록물의 분류를 정리분류와 검색분류로 나누어 활용한다. 본고는 그중 정리분류의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 또 분류의 원칙이 실제 각 당안관의 기록물 정리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분류이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나아가 중국 제 2 역사당안관의 민국시기당안의 분류와 전종구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글을 기획한 목적은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어: 당안분류, 정리분류, 중국 제 2 역사당안관, 민국당안, 조선총독부 공문서

Abstract

Classification of archival collections in China is usually divided into two approaches, arrangement classification and retrieval classification. Focusing on arrangement of archives, this paper reviews what is the content and principle of arrangement, and how these principles are applied to actual arran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China. The review examines the historical archives of Rep. of China, in the Second Historical Archives of China. It is expected that current review could enlighten studies on arrangement of historical archives created by Government-General of Chosun.

Key Words: archival classification, arrangement, The 2nd historical Archives of China, historical Archives of Rep. of China, Public Records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3-AM1013). 이 논문은 2002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심포지엄 겸 기초학문육성과제 중간발표회(2003. 5. 17)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rykim@shinbiro.com.).

• 접수일 : 2003. 8. 26 • 최초심사일 : 2003. 9. 1 • 최종심사일 : 2003. 9. 9

I. 머리말

중국의 기록물 분류방식은 당안¹⁾실체의 정리를 위한 정리분류와 당안정보의 검색을 위한 검색분류의 두 가지로 나뉜다. 정리분류는 “실체분류”라고도 하며, 보통 전종이론을 활용하여 전종번호—안권목록(리스트)번호—안권(화일)번호—문건번호의 순으로 기술한다. 검색분류는 “정보분류”라고도 하며, 이미 기술이 끝난 문건이나 그 종합체(화일)의 조목에 대해 『중국당안분류법』과 같은 일정한 분류체계에 의거한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각종 분류검색도구를 만드는데 편리하게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분류방식이 각각 당안의 보관과 검색에 유용하다는 이유로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이중적인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 당안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기록물 분류방식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근래 몇 편의 논문을 통하여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나, 그 전모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아직 크게 부족하다.²⁾ 사실 중국은 근대적인 기록학의 후발주자이지만, 풍부한 문서기록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현대화의 급격한 변화속에 서양의 이론을 받아들여 새로운 이론과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중국에서는 역사당안을 현행 당안과 뚜렷하게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당안에 대한 그들의 정리분류 방법은 우리 역사기록물의 분류에 적합한 방안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

그러므로 본고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당안분류의 출발점이 되는 정리분류에 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정리분류의 원칙과 내용은 무엇이며, 정리분류의 기본이 되는 전종이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분류의 원칙이 실제 각 당안관(기록보존소)의 기록물 정리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분류이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나아가 중국 제 2 역사당안관의 민국시기당안의 분류와 전종구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글은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분석³⁾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목

- 1) 당안(檔案)이란 과거와 현재에 국가기구, 사회조직 및 개인이 정치, 군사,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종교 등 활동에 종사하면서 직접 형성한,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각종 문자, 도표, 음향과 영상 등 여러가지 형식의 역사기록을 의미한다. 陳兆禎·沈正樂 主編, 最新檔案工作實務(中國檔案出版社, 1996), p.1033. 당안은 1949년 신중국의 성립이전에 생산된 “역사당안”과, 49년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현행당안”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본문에서는 편의상 기록, 기록물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 2) 최근에 임춘수가 정리분류에 관한 내용을 번역 소개하였으며, 남경호도 전종이론에 따른 정리분류 방식을 소개하였다. 임춘수 편역, 중국의 기록관리(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2), pp.83-136. 남경호, “전종이론의 개념과 분류업무에의 적용”, 명지대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제 3회 학술대회는문집(2003), pp.1-23. 그의 검색분류에 관해서는 김종천, “『中國檔案分類法』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8호(1995), pp.267-285. 이승휘, “중국의 혁명역사기록물의 목록기술과 검색분류(1)·(2)”, 기록학연구 제 4·5호(2001/ 2002), pp.131-161, pp.205-237 등이 있다.
- 3) 조선총독부 공문서는 1910년-1945년까지 식민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보여주는 사료이자, 당시 활동했던 인물들의 행적을 확인하고 각종 소유권의 근거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연구자들을 비롯하

적에서 마련되었다. 따라서 정렬분류의 원칙과 내용은 현행당안을 포함한 분류이론 전반을 살펴보면, 내용서술 및 사례에서는 주로 역사당안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므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과학기술당안이나 전자당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II. 정렬분류의 원칙과 내용

정렬업무의 기본 임무는 당안실체를 질서있고 조리있게 보존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당안관리 업무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다. 당안을 정렬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한다. ① 당안의 본질적인 특성을 존중하고 지키며, 당안문건 사이의 역사적인 연계(유기적인 연계)를 보호 유지한다. ② 보존 관리와 이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즉, 간결하고 편리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③ 원래의 정렬결과를 충분히 존중하고 이용한다. 단, 원래 정렬된 결과가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면 국부적, 혹은 전체적으로 조정하거나 새로 정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원래의 정렬결과 중 이용할 만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유지하고 이용해야 한다.⁴⁾

당안실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당안관이나 당안실(자료관)에서 행하는 정렬분류의 기본적인 내용은 전종의 구분과 배열, 전종내 당안의 분류, 유별내 안권의 배열과 번호부여 및 안권목록의 작성 등을 포함한다. 전종을 단위로 하여 당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종을 구분하는 일은 정렬분류의 시작이자 핵심이 된다. 전종을 구분하려면 우선 전종의 의미와 구성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1. 전종의 구분과 배열

전종(全宗)이란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 조직, 혹은 개인이 사회 실천활동 중에 형성한 당안의 유기적인 덩어리를 의미한다. 즉, ‘하나의 단위의 모든 권종(一個單位全部卷宗)’이란 뜻으로, 중국이 소련을 통해 프랑스의 풍(fonds) 개념을 받아들여 만든 조어이다.⁵⁾ 당안실체에 대한 분류는 전종에 대한 이론(원칙)에 근거하고 있는데, 전종이론이란 간단히

여 일반 시민들에게 폭 넓게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높은 사료적 가치와 넓은 이용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되지 못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된 채 소장기관의 형편에 따라 편의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인 분석(분류 및 기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4) 鄧紹興·陳智爲 主編, 檔案管理學(修訂本)(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8), pp.92-95. 임춘수, 전게서, pp.83-88.

5) 陳兆不吳·和寶榮 主編, 檔案管理學基礎(修訂本)(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6), pp.98-99. 卷宗이란 당안의 범칭이다.

말하자면, “전종은 유기적인 연계를 갖는 문건의 덩어리이므로, 당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전종에 속하는 당안을 분산시키거나 서로 다른 전종의 당안을 섞을 수 없다”. “전종은 일정한 역사와 현실활동 중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객관성을 지니고 기록물이 형성된 특징을 드러낸다.” “전종은 일정한 사회단위(국가기관·사회단체·개인·기업단위 등), 혹은 사회활동(공정항목·과학연구항목·생산항목 등)⁶⁾이 기초가 되어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전종이론이란 이러한 전종의 개념에 의거하여 당안을 관리하는 이론과 원칙을 말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래원원칙(來源原則)”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전종의 경계와 전종의 유기적인 전체성을 강조하고 있다.⁷⁾

당안실·당안관에서는 전종을 단위로 당안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전종의 구분과 배열은 당안관에서 행하는 정리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자, 가장 높은 관리단계이다. 이 업무는 전종의 확인과 구분, 전종의 보충형식을 만드는 것, 전종군(全宗群)을 나누는 것, 전종의 편호와 배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전종의 확인

전종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 조직, 혹은 개인이 사회활동중에 형성한 당안은 하나의 전종을 구성한다. 이와 같이 전종을 구성하는 국가기구·사회조직·개인 혹은 생산건설·과학연구항목의 조직자를 “입당단위(立檔單位)” 혹은 “전종의 구성자”라고 부른다. 전종을 확인한다는 것은 이들 기관(혹은 조직, 단위)이나 개인이 사회적인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종의 구성자는 기관(조직, 단위)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의 독립성을 확정짓는 요소, 즉 입당단위의 구성조건은 첫째,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명의로 외부에 대해서 공문을 발행한다. 둘째, 하나의 회계단위이거나 독립채산단위로서, 스스로 예산 혹은 재무계획을 편성한다. 셋째, 인사를 관리하는 기구나 혹은 인원을 설치하고 있으며, 일정한 인사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당단위가 되려면 이처럼 행정상·재무상·조직인사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실제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므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는 행정상의 독립성을 위주로 하여 분석한다.⁸⁾

그렇다고 해도 실제상 각급의 사회조직은 모두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수준에서 입당단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많은 사람들이 “기관”이나 “내

6) 공정항목·과학연구항목 등 사회활동의 결과 생산된 전종은, 조직기관전종이나 개인전종과 구분하여 “항목전종”으로 부르기도 한다. 나아가 何嘉蓀 등은 조직기관이나 개인 등 행위주체가 형성한 전종을 “주체전종”, 항목전종과 같이 행위의 결과 형성된 전종을 “객체전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何嘉蓀, 傅榮校 著, 文件運動規律研究(中國檔案出版社, 1999), pp.166-202.
7) 鄧紹興 主編, 檔案分類(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8), pp.35-37. 陳兆禎·沈正樂 主編, 現代檔案工作實務(中國檔案出版社, 2001), p.54. 래원원칙(principle of provenance의 번역어)이란 당안이 형성된 연원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이때 연원은 조직적 출처+기능적 출처를 반영한다.
8) 鄧紹興 主編, 전계서, pp.37-38.

부기구”를 가지고 입당단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기관과 내부기구라는 두 가지 형식이 그 활동내용의 독립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개 하나의 기관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사회기능을 갖춘 사회조직이며, 그 내부기구는 그 기관을 이탈하여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고·중층 영도기관과 대형 직능기관의 경우 그중 일부의 내부기구, 이를테면 현급(縣級)이상 각급 지방당위원회(地方黨委員會)의 部·委(조직부, 선전부, 紀檢委)나 일부 중앙, 국가 部·委중의 司·局(외교부의 禮賓司 등)도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문서를 보내어 처리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사회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기관이든 그 내부기구든지간에, 자신의 명의로 외부에 대해 공문을 발행할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직능을 행사한다고 보며,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직능을 행사한다면 독립적인 입당단위를 구성할 수 있다.⁹⁾

그외 입당단위의 구성여부를 확정할 때 기관규모의 대소나 당안수량의 다과는 고려해야 하지만, 결정적인 필요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올 기록물이 많은 현행당안의 경우와는 달리, 역사당안처럼 이미 수집이 끝난 기록물의 경우는 현재 남아있는 기록물의 수량을 충분히 참고하여 전종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전종의 구성자가 개인일 경우 전종의 구성요건을 확인하는 일은 비교적 간단한 데, 개인명으로 사회활동에 종사하였으며, 유명한 성년공민이고, 그 당안이 비교적 완전하게 남아 있다면, 하나의 개인전종(인물전종)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개인전종은 그다지 많지 않다. 왜냐하면 모택동이나 주은래처럼 유명인의 당안은 대부분 조직과 개인의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경우 기관조직전종과 겹치지 않는 개인적인 속성을 가진 당안만이 개인전종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2) 입당단위의 변화에 따른 전종의 구분

일부 기관의 증설이나 폐지·합병, 기관의 명칭이나 소속관계의 변화, 직권범위의 변화와 같은 입당단위의 변화로 인하여 전종의 경계선이 불분명해 질 수 있다. 전종을 구분한다는 것은 이처럼 뒤섞이기 쉽거나 혹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전종간의 경계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획하여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서로 다른 전종의 당안을 구별하여 전종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고 보존 관리함으로써 서로 다른 전종의 당안이 서로 혼재되는 현상을 막는 것이다. 전종구분의 일반적인 처리원칙은 정치성질과 기본기능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면 새로운 전종을 만든다는 것이다.¹¹⁾

첫째, 정부기관이나 단체·사업단위는 정치성질면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9) 何嘉蓀, 傅榮校 著, 전게서, pp.187-189.

10) 鄧紹興·陳智爲 主編, 전게서, pp.99-100, p.104.

11) 이하의 내용은 鄧紹興 主編, 전게서, pp.38-40.

이를테면 중국에서 1949년 이전 구정권의 정부조직과 49년 이후 신정권의 정부조직은 정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그 당안은 각각 별도의 전종을 구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치성질이 현저하지 않은 학교나 종교조직이나 개인의 경우 신정권 수립이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므로 그 당안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전종으로 구성한다.

둘째, 정치성질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 그 기본기능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① 새로 성립된 기관에서 생산된 당안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전종을 구성한다. ② 어떤 취소된 기관을 기초로 하여 새로 성립된 유관기관일 경우, 원래의 취소된 기관이 생산한 당안으로 하나의 전종을 구성하고, 취소된 기관의 부분적인 기능이나 혹은 업무를 계승하여 새로 성립된 기관이 생산한 당안은 별도로 새로운 전종을 구성한다. ③ 두 개 이상의 취소된 기관을 합병하여 성립된 새로운 기관일 경우, 합병전 원래의 각 기관이 생산한 당안은 각각 전종을 구성하고, 합병후 성립된 신기관이 생산한 당안은 새로운 전종으로 만든다. ④ 하나의 입당단위에서 독립해 나온 새로운 기관으로 원래 입당단위의 일부 직능을 대신할 경우, 독립된 기관이 된 시점부터 그 기관이 생산한 당안은 하나의 새로운 전종을 구성한다. 그리고 원래 입당단위의 전종은 그대로 유지하여 인위적으로 중단시키지 않는다. ⑤ 하나의 입당단위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다른 입당단위의 내부조직기구로 변모했을 경우, 개편이전 원래의 입당단위에서 생산한 당안은 하나의 전종으로 만들고, 개편이후에 생산된 당안은 소속기관 전종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⑥ 문서를 별도로 처리하는 두 개 이상의 조직이 합동으로 만들어 사무를 보는 조직인 경우, 그들의 기본기능은 여전히 독립적이므로 생산한 당안도 당연히 나누어 전종을 구성해야 한다. ⑦ 임시성 기구의 당안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전종을 만들지는 않으며, 각 주관기관 전종의 구성부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임시성 기구가 비교적 독립성이 크고 직능이 중요하며 장기간 존재하였다면, 그들의 당안도 단독으로 새로운 전종을 구성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입당단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전종을 구성할 수 있지만, 그외 비근본적인 변화(이를테면 입당단위의 명칭·업무지점의 변화, 소속관계의 변경, 내부기구나 관리체제의 조정, 직권범위의 확대나 축소, 단기적인 활동정지와 회복 등)는 새 전종을 구성하지 않는다. 당안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나치게 전종을 세분하는 것은 적당치 않기 때문이다.

3) 전종의 보충형식을 만드는 방법

전종이론에 따르면 통상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 조직, 혹은 개인은 하나의 입당단위이며, 하나의 입당단위가 형성한 전체 당안은 하나의 전종을 구성한다. 하지만 전종구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법이 없거나, 혹은 적용하기 어려운(적용하면 더 불편할) 경우, 전종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 당안에 대해서 유사전종의 방법을 채택한다. 즉, 정식의 독립전종(상술한 조직전종이나 개인전종)외에 연합전종, 전종회집, 당안회집 등을 만드는 것이

다.¹²⁾

연합전종은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입당단위가 형성한 당안이 이미 뒤섞여 있어 전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당안의 덩어리이다. 연합전종은 입당단위는 명확하지만, 단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입당단위가 형성한 당안 전체를 하나의 전종으로 보는 것이다. 연합전종은 명칭중에 당안을 형성한 입당단위의 명칭을 모두 밝혀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호북성경공업국, 경공업 聯社연합전종”이라고 한다.

전종회집(全宗滙集)은 ‘회집전종’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특징(입당단위의 성질, 존재시기 혹은 지역, 기타 역사적 연계)에 따라 결합시킨, 당안의 수량이 매우 적은 소전종(小全宗)들의 집합체이다. 전종회집 역시 하나의 전종번호를 받지만, 연합전종과는 달리 그 내부의 당안들은 입당단위에 따라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므로, 소속 당안의 수량이 늘어나거나 특정한 필요에 따라 나중에 분리 독립시킬 수도 있다.

당안회집(檔案滙集)은 소속전종을 알수 없는 분산되고 불완전한 문건들을 일정한 특징(내용, 시간, 지역, 명칭 등)에 따라 인위적인 방식으로 조합한, 논리적 연계를 가진 당안의 집합체이다. 그의 당안회집의 특수형식으로써, 유명인사가 일생동안 직접 형성하거나, 각 방면에서 수집한 관련 기록물·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인물당안회집도 있다.

이들 전종의 보충형식은 입당단위가 다르므로 엄격한 의미상 (독립)전종은 아니지만, 실제 관리업무에서는 정식 전종과 같이 취급된다. 즉, 독립전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전종번호를 부여받고 통일적으로 배열하며 하나의 제목을 갖는다.

4) 전종의 편호와 배열

전종의 편호(編號)란 전종에 대해서 하나의 고정된 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을 해당 전종을 지칭하는 부호로 사용하는 것이다. 전종의 배열은 서고내에 각 전종의 공간적인 보존 관리위치를 고정하고 순서를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당안관에서는 모든 전종에 대해 입관되어 온 순서에 따라 자연정수 번호를 부여하고 배열하지만, 번호와 배열순서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전종내 당안의 분류

전종내에서 당안을 분류한다는 것은 입당단위에서 생산한 당안을 그 내원·내용·시간 혹은 기타 형식 특징에 따라 몇 개의 유별로 나누어, 일층 더 조리있게 질서화 하는 것이다. 이 업무는 일반적으로 당안실에서 담당하며, 당안관은 일단 접수한 전종에 대해서는

12) 鄧紹興 主編, 전계서, pp.42-44.

다시 분류하지 않는다.

전종내 당안을 분류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門類의 당안은 모두 동일한 실천활동중에 형성된 당안이므로 내재적인 필연관계를 갖고 있어 서로 나눌 수 없는 유기적인 덩어리이다. 그러므로 당안분류시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나누면 안된다는 ‘덩어리가 긴밀하면 나눌 수 없다는 원칙’이다. 둘째, 동일한 활동 영역범주에서 생산된 당안은 공통성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의 류(類)로 나누고, 다른 영역범주에서 형성된 당안은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른 류로 구분한다는 ‘영역범주의 원칙’이다. 셋째, 각종 실천활동의 영역이 다르고 활동의 내용성질도 달라서 활동과정에서 형성된 당안의 내용성질도 서로 다르다면 류를 나누어야 한다는 ‘내용성질의 원칙’이다. 넷째, 입당단위의 직능성질이 서로 달라서 그들이 활동중에 형성한 당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류를 나누어야 한다는 ‘직능성질의 원칙’이다. 이와 같은 전종내 당안분류의 원칙은 당안을 공통점에 따라 하나로 묶어주고, 차이점에 따라 서로 분류해주는 중요한 분류 근거가 된다.¹³⁾

기관조직전종내의 당안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시간분류법(연도, 시기), 래원분류법(조직기구, 생산자, 통신자), 내용분류법(문제, 실물, 지리), 형식분류법(종류, 매체, 형상규격) 등이 있지만, 흔히 사용되는 분류법은 주로 연도분류법·조직기구분류법·문제분류법(혹은 주제분류법)이다. 기관조직전종내의 당안을 분류할 때에는 연도와 조직기구분류법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문제분류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 왜냐하면, 연도나 조직기구분류법은 분류의 근거가 명확하고, 연도나 조직기구는 모두 현실 중에 진짜로 존재하던 객관적인 사실이며, 당안이 생산될 때의 역사적인 면모를 재현하여 당안의 본질적인 특성을 체현해 내기 때문이다. 반면에 문제분류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존성이 없는 논리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실무에 응용할 때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¹⁴⁾ 당안관리의 실제업무에서는 대부분 두 개의 분류법을 결합한 복식분류법을 사용한다. 즉, 위의 3가지 분류방법중 두 가지 방법을 연합하여 연도—기구, 기구—연도, 연도—문제, 문제—연도의 4가지 방법을 만들어 쓴다.

그 외, 개인전종(인물전종)내 당안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해당 개인이나 혹은 가족성원의 사회활동과 개인생활의 현실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기본방향(즉, 유별)을 만들어 준다. 그 구체적인 유별은 대체로 전기자료, 창작자료, 공무활동자료, 개인서신, 경제자료, 친속자료, 평가자료, 음악·영상자료, 기타자료로 나뉜다.

3. 유별내 안권의 배열과 안권목록

13) 陳兆祿·沈正樂 主編, 전계서(1996), pp.89-90.

14) 鄧紹興·陳智爲 主編, 전계서, p.113. 임춘수, 전계서, p.110.

안권(案卷, 화일)은 당안의 기본적인 보존 관리단위이고, 서로 연계된 약간의 문건들로 구성된 조합체이다. 입당단위에서 일상 업무중에 생산해 낸 문건은 당안실로 이관하여 보존 관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안실의 요구에 맞춰 당안을 관리하기에 편한 하나 하나의 안권으로 만들어야 한다(‘立卷’). 이와 같은 입권업무는 문건을 생산한 단위나 개인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며, 당안관리부문은 그에 대해 감독하고 지도하는 책임을 진다. 입권 작업에 따라 만들어진 안권들은 문건사이의 역사적인 연계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보존 관리와 이용에 편리해야 하며, 각각의 보존관리기한을 구분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표준에 따라서 안권의 표지를 갖추어야 한다.¹⁵⁾

안권의 배열은 전종내 각 안권사이의 놓여지는 순서를 고정시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안권이 생산된 시간의 순서와 각 안권의 내용상 상호연계에 따라서 진행된다. 편호는 각각의 안권마다 고정된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자연정수를 채용하여 안권의 배열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한다.

안권목록(리스트)은 반드시 전종을 단위로 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아울러 전종내 당안실체의 질서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목록중의 條目은 반드시 안권의 배열 순서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또한 안권번호의 순서계통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각각의 안권 목록에는 하나의 안권목록번호(목록번호로 줄여 쓰기도 한다)가 정해지며, 그 번호를 검색과 관리의 표식으로 활용한다.

안권목록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서적식(부책식)인데, 빈번하게 사용되므로 두꺼운 표지를 입혀두는 것이 좋다. 대개 16절지를 사용하여 횡으로 만든다. 안권목록의 구조는 겉표지와 속표지, 목차, 서언이나 설명, 약칭대조표, 안권목록표, 비고표 등이다. 목록의 주표인 안권목록표는 표의 형식을 인쇄하여 쓰는데, 각각의 안권마다 안권번호·안권의 표제(제목)·생산연도·보존 관리기한·면수·비주 등의 항목이 등록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를 응용한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문서를 스캐닝하거나 복사하는 일이 차츰 많아짐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입권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입권 개혁의 방법으로는 첫째, 안권의 내용이 단일하고 분량이 적은 小卷(혹은 純卷)을 구성하여 소프트카바로 장정하거나 둘째, 아예 입권을 하지않고 문서번호나 시간 혹은 문제에 따라 문건을 배열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¹⁶⁾

15) 안권의 배열과 안권목록에 관해서는 鄧紹興·陳智爲 主編, 전계서, pp.122-127. 임춘수, 전계서, pp.121-127에 의함.

16) 陳兆祺·沈正樂 主編, 전계서(2001), pp.89-93.

Ⅲ. 중국 제 2 역사당안관의 민국당안 정리분류의 사례

전종이론에 따른 당안의 실제분류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 제2 역사당안관(이하 남경당안관)의 경우를 살펴보자. 남경당안관은 중화민국시기(1912-1949년)의 당안을 전담하는 당안관으로서 1964년 정식 성립된 이후 약 40여년간 중화민국시기의 각 중앙정부기관 및 그 소속기구의 당안들을 널리 수집한 결과 1992년 말까지 총 785개 전종, 156만권의 당안을 소장하고 있다.¹⁷⁾ 『中國第二歷史檔案館指南』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남경당안관에 소장된 주요 전종에 대한 소개를 하는 가이드 북이므로 소장된 당안의 정리분류, 특히 전종의 확인과 구분, 전종의 보충형식 및 전종의 배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 민국당안의 정리분류 방침

남경당안관은 “전종”의 개념과 전종에 따라 당안을 정리하는 원칙에 근거하고, 당안관에 소장된 당안의 실제에 맞춰 민국시기 당안의 정리분류에 다음과 같은 주요 방법을 채용하였다.¹⁸⁾

1) 전종의 확정

접수 수집되어 당안관에 들어온 당안은 성실한 고증을 거쳐, 어떤 독립기관이 형성한 것인가를 확정한다. 각각의 독립적인 직능기구가 형성한 당안은 당안관에 들어오면, 모두 하나로 집중되고 하나의 전종으로 확정되어 단독으로 정리를 진행하고, 아울러 당안의 보존 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실체단위가 된다. 만약 이후 그 기구가 형성한 당안이 다시 접수되면, 반드시 그 전종에 포함시켜 정리해야 하며 별도로 단독 정리할 수 없다.¹⁹⁾

전종의 확정시 일부 당안에 대해서는 기구와 당안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변통적인 처리를 하였다. ① 각각의 전종을 구성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직능조직이지만 존재기간이 짧고 남아있는 당안의 수량이 매우 적을 경우 하나의 전종으로 확정하였다. 이를테면 남경 임시정부 및 그 각 부는 모두 독립적인 직능이 있는 국가기구이므로 그 당안은 독립적인 전종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기간이 매우 짧고(1912.1-1912.3) 남아있는 당

17) 趙銘忠·李祚明 主編, 中國第二歷史檔案館指南(中國檔案出版社, 1994), 前言 pp.2-3.

18) 이하 1), 3)-5)의 구분은 앞서 II-1 정리분류의 원칙과 내용 및 상계서, 前言 pp.6-8에 소개된 남경당안관의 정리분류의 방침을 정리한 것이다. 그에 대한 사례소개는 상계서에 소개된 개별 전종의 내용을 읽고 필자가 그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19) 상계서, 前言 p.6.

안도 총통부 3권, 내무부 12권, 재정부 15권, 육군부 89권, 留守部 18권 등 총 137권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남경임시정부와 그 각부의 당안을 <남경임시정부 (1912.1—1912.3), 전종번호 26>²⁰⁾ 라는 하나의 전종으로 확정하였다.

② 어떤 한 기구 및 그 소속 단위기구가 모두 독립적인 직능기구로 그들이 형성한 당안을 각각의 전종으로 나눌 수 있지만, 단 역사상 이미 이들 기구가 형성한 당안을 혼합하여 하나로 분류 정리하였고, 만약 전종에 따라 엄격히 분류하면 매우 곤란해질 경우, 이왕에 정리한 체계를 유지하고 바꾸지 않았다. 이를테면, <농림부농산촉진위원회, 식량증산위원회, 농업추광위원회(1938—1949), 전종번호 437>²¹⁾를 보자. 1938년에 설립된 농산촉진위원회와 1941년에 설립된 식량증산위원회가 합병하여 1945년 농업추광위원회가 정식 성립되었으나, 1947년 식량증산위원회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들 위원회는 모두 농림부 산하의 독립적인 직능기구이지만 각각 별도의 전종으로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남경당안관은 관내 소장된 이들 3개 위원회의 당안 총 2273권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전종으로 구성하고 있다.

2) 앞서 입당단위의 변화에 따라 전종을 구분하는 일반원칙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조직기구와 업무상의 변화에 따라 전종간의 경계가 뒤섞인 상황에서 새로운 전종을 구성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한 일이다. 담당자는 전종이론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²²⁾

① 새로 성립된 기관에서 생산된 당안으로 새로운 전종을 구성한 경우: <行政院收復區全國性事業接收委員會, 전종번호 172(2)>²³⁾ 이 위원회는 1945년 11월에 성립하였다가 1946년 6월에 폐지되어 존속기간이 약 8개월에 불과하며 생산된 당안의 수량도 총 90권에 불과하다. 하지만 육군총사령부와 함께 전국적인 경제(공광업, 상업, 농림, 식량, 수리 등을 포함), 교통, 금융사업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다는 독립적인 직능이 있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나 문건의 다과에 상관없이, 별도의 전종으로 구성되었다.

② 두 개 이상의 기관을 합병하여 새로운 기관이 성립될 경우, 합병전 원래의 각 기관이 생산한 당안은 각각 전종을 구성하고, 합병후 성립된 신기관이 생산한 당안은 새로운 전종으로 만든다 : <地政署(部)(1942—1949), 전종번호 36>. 1942년 6월 내정부의 地政司와 地價申報處가 합병하여 地政署가 성립되었으며 행정원에 직속되었다. 1947년 5월 지정서가 확대되어 地政部가 되었지만, 1949년 3월 또 다시 지정서가 되었으며 내정부에 예속되었다. 동년 9월에는 지정서가 축소개편되어 地政司가 되었다.²⁴⁾ 이 경우 1928년 4월 이

20) 상계서, p.1.

21) 상계서, pp.313-315.

22) 이것은 남경당안관의 정렬분류방침에는 없지만, 전종구분의 처리원칙에 따라 필자가 그 해당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23) 趙銘忠·李祚明 主編, 전계서, pp.132-133.

24) 상계서, p.152.

래 내정부의 토지사(지정사) 및 지가신보처에서 생산한 地政관계 문건들은 <내정부, 전종번호 12> 전종에 포함되었으며, 1942년 지정서가 성립되고 난 뒤부터 생산된 문건은 새로운 <지정서, 전종번호 36> 전종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지정서는 성립이후 조직명칭의 변화, 소속부처의 변화, 기능의 확대와 축소가 있었지만, 전국의 토지행정사무를 주관한다는 근본적인 직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42년 성립된 이후 1949년 정권이 바뀔때까지 하나의 전종을 구성하였다.

③ 입당단위에 변화가 발생해도 기본직능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경우 하나의 전종을 구성한다: <위생부(署)(1928-1949), 전종번호 372, 총 1211권> 위생부는 1928년 성립되어 행정원에 예속되어 전국의 위생사무를 관장하였다. 그후 1931년 위생서로 축소개편되어 내정부에 예속되었으며, 1935년 다시 행정원에 1938년에는 다시 내정부에 1940년에는 또 다시 행정원에 예속되었다. 1947년 위생서는 위생부로 확대개편되었으며 1949년에는 다시 위생서가 되어 내정부에 예속되었다.²⁵⁾ 기구의 확대·축소에 따른 명칭변경과 소속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위생사무를 관장한다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하나의 전종을 유지하였다.

④ 전종구분의 처리원칙에 의하면 입당단위의 소속관계의 변경이나 직권범위의 확대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며, 따라서 새로운 전종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종을 구성한 사례도 적지 않게 보인다: a) 조직의 확대개편에 따라 새로운 전종을 구성한 사례: 1947년 5월 內政部戶政司가 확대되어 內政部人口局이 되면서, <내정부인구국(1947—1949), 전종번호 278>이라는 새로운 전종이 구성되었다. 내정부인구국의 주요 직능은 “총류, 호구등기 및 인구조사, 호적성명의 개정, 국적과 화교관리, 병역” 등으로 전국의 인구조사, 등기와 조절 등 사무로써, 이전 내정부 호정사의 업무와 마찬가지로였다.²⁶⁾ 다만 내정부인구국의 당안이 총 20272권이라는 점에서 볼 때(내정부 전종의 당안은 33189권) 생산된 당안의 수량이 새로운 전종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b) 명칭과 소속기관이 바뀌고 업무의 내용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전종이 구성된 경우: <內政部禁煙委員會(1938—1949), 전종번호 41> 1928년 8월에 성립된 금연(아편금지)위원회는 처음에 국민정부에 속하였다가 10월 행정원이 성립하자 그에 소속되었다. 1935년 6월 금연위원회는 軍事委員會委員長行營禁煙위원회총회로 개조되었다. 동년 11월 군사위원회에 직속되었으며 금연총회로 개칭되었다. 1938년 2월 내정부에 소속되었으며 내정부금연위원회라고 칭하였다. 1949년 4월 내정부금연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내정부경정사가 처리하였다. 내정부금연위원회당안은 829권이며 그 주요내용은 “총류, 운반판매, 감독관찰, 밀매규제, 화교금연, 국제금연” 등 이다.²⁷⁾ 앞의 4항목은

25) 상계서, p.153.

26) 상계서, pp.145-146. 한편 원칙적으로는 1947년 내정부인구국의 당안은 모두 <전종번호 278>에 포함되어야 하나 일부는 <내정부 12>에도 포함되어 있다.

27) 상계서, pp.149-150.

이전에도 있던 일반적인 아편금지업무이지만, 뒤의 2항목은 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다. 내정부금연위원회가 성립된 후 아편금지업무의 내용이 확대되었음을 알수 있다.

1938년 이전 금연업무를 관장했던 행정원직속 금연위원회의 문건은 <행정원 전종번호 2>의 금연항목에 포함되었고,²⁸⁾ 군사위원회(위원장行營)소속되었던 시기의 문건은 <군사위원회위원장各行營>의 금연항목에 포함되었다.²⁹⁾ 1938년 이후 내정부금연위원회가 성립되면서부터 비로소 하나의 새 전종을 구성한 것이다. 이는 전국의 금연업무를 담당한다는 기본적인 직능에는 변화가 없지만, 명칭과 소속기관이 바뀌고 업무의 내용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전종이 구성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금연위원회의 경우 당안의 수량은 총 829권으로 많지 않으나, 당시 아편금지업무의 중요성이 새로운 전종구성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내정부> 전종에도 내정부, 금연위원회 및 각 성시의 금연관련 문건이 포함되어 있는데,³⁰⁾ 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행정원> 전종이나 <내정부금연위원회> 전종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종구분의 일반적인 처리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예외들이 존재하며, 그만큼 전종을 구분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사실 처리원칙이란 것 자체가 조직기관이 계속 바뀌고 문건이 계속 생산되는 현행당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현행당안의 경우 전종이 너무 많으면 전체적인 보관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번거로우므로, 원칙적으로 전종을 지나치게 세분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당안의 경우는 조직이 이미 폐지되었고 생산된(혹은 남아있는) 문건의 수량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는 다르다. 즉, 전종을 세분해봐야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전종을 구성하는 것이 현행당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로와 보인다. 그리고 조직기관의 전종을 새로 구성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당안의 수량이나 사안(직능)의 역사적 중요성이 전종구분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전종의 보충형식

민국시기의 당안은 흩어지고 없어진 것이 매우 많기 때문에 어떤 당안은 너무나 자질구레하고 복잡하여 어떤 기구가 형성한 것인지를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혹 그 형성기구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기구의 당안이 지나치게 자질구레하여 따로 단독전종을 구성하기에 적당치 않은 경우도 있다. 이들 당안에 대해서는 성질 혹은 당안내용이 서로 같은 것(혹은 서로 비슷한 것)들을 따로 나누어 “전종회집”이나 “당안회집”으로 조직하였다.

이를테면, <국민당당무계통전종회집(1927—1949), 전종번호 9 및 726>³¹⁾은 중국국민당

28) 상계서, p.111.

29) 상계서, p.478.

30) 상계서, p.147.

31) 상계서, pp.652-657.

의 10여개 당무기관이 생산한 총 1696권의 당안을 모은 전종회집이다. 이 당안들은 중앙집행위원회비서처당안, 중앙조직부당안, 중앙선전부당안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일부였던 삼청단중앙단부당안의 경우 따로 나뉘어져 <삼청단중앙단부(1938-1947), 전종번호 728>³²⁾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북경정부전종회집(1912—1928), 전종번호 1041>³³⁾은 북경정부에서 생산된 총 462권의 당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298권은 입당단위가 확인되는 53개 기구에서 생산된 것이고, 나머지 164권은 입당단위가 불분명한 당안들이다. 그러므로 전종이론을 엄밀히 따르자면 양자를 구분하여 앞의 것은 전종회집으로, 뒤의 것은 당안회집으로 분류해야 한다. 정확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49년 이전부터 이미 양자를 합쳐서 하나의 전종으로 분류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고 바꾸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당안회집의 사례도 적지 않은데 <군사계통각기구당안회집(1927—1949, 전종번호 627)>³⁴⁾은 60여개에 달하는 국민정부의 각종 군사기구가 생산한 총 1535권의 당안을 모은 것이다. 또 <각사회단체당안회집, 전종번호 588>³⁵⁾은 1930-1949년간 30여개의 사회단체들이 생산한 519권의 자질구레한 당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당안의 경우 입당단위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안회집으로 묶은 것이다.

전종회집이나 당안회집은 제목에 명시되기 때문에 금방 식별이 가능한 반면, 남경당안관의 경우 “××, ××연합전종”이란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농림부, 공상부, 농상부, 실업부, 농공부, 전종번호 1038> 전종과 같은 경우, 1912년에 설립된 농림부와 공상부, 1913년 농림·공상부가 합병하여 성립된 농상부, 1927년 농상부가 해체되면서 분리 설립된 농공부와 실업부의 농공실업에 관한 당안(총 2688권)을 합쳐 하나의 전종을 구성한 것이므로,³⁶⁾ 연합전종이라고 생각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남경당안관은 “××, ××연합전종”이란 정식명칭을 쓰지않고 간단히 “××, ××”로 입당단위를 열거해 주는 방식으로 연합전종을 명칭하고 있다고 생각된다.³⁷⁾ 연합전종의 개념은 실제 당안의 정리분류과정에서 “인위적인 분할과 임의적인 연합”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방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³⁸⁾ 각 당안관별로 적용에 편차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전종명칭에 연합전종이란 표시가 없더라도, 입당단위가 “××, ××,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는 연합전종이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한다.

32) 상계서, pp.657-658.

33) 상계서, pp.71-75.

34) 상계서, pp.541-546.

35) 상계서, pp.674-676.

36) 상계서, pp.39-40.

37) 이는 다른 당안관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각 성·시당안관지남을 살펴보면, 윤남성당안관과 천진시·대련시·청도시당안관의 경우는 전종명칭에 연합전종임을 표시해 주고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연합전종이란 표시가 없다.

38) 陳兆才吳·和寶榮 主編, 전계서, p.109.

4) 전종의 편호와 배열

남경당안관은 확정된 하나의 전종마다, 하나의 전종번호를 부여하였다. 관리하기에 편하고, 소장한 당안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각각의 정권시기와 각각의 전종성질(유형)에 따라 당안관에 소장된 당안전종을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다. 그 4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손중산(손문)이 영도하는 남경임시정부와 남방혁명정권의 당안, 국민당기구와 남경국민정부의 당안은 전종번호 1부터 999의 범위내에서 편열한다. ② 북경민국정부의 당안은 전종번호 1001부터 1999의 범위내에서 편열한다. ③ 日僞정부(중일 전쟁시의 친일정권)의 당안은 전종번호 2001부터 2999의 범위내에서 편열한다. ④ 인물당안은 전종번호 3001부터 편열한다. 각 부분의 당안내부에서 전종번호의 편열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당안이 당안관에 들어온 선후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매긴다.

5) 당안정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당안이 형성되는 과정중의 역사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경당안관은 각각의 전종내 당안을 정리할 때, 분류, 입권(화일링)에서부터 배열, 목록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능한한 당안 형성과정중의 연계를 고중하고 당안 원래의 분류정리체계를 분명히 하여, 가능한 한 당안간의 역사관계를 유지하고 원래의 분류정리체계를 보호하기 편하게 함으로써, 역사적 원래의 모습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단, 일부분의 당안은 여러번에 걸친 정리를 거치면서 원래의 분류정리체계가 혼란된 경우도 있고, 소량의 당안은 심지어 원래의 역사연계가 분할되어 모습이 전혀 달라져 조사하고 사용하는데 일정한 곤란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종원칙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면, 그 내용을 상급기구에 보고하고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전종구성의 사례

이번에는 남경당안관에 소장된 남경국민정부시기당안³⁹⁾에 대한 전종구성의 사례를 국민정부 행정원소속 내정부⁴⁰⁾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자.

39) 남경국민정부시기당안은 총 590여개 전종 131만여권으로 남경당안관에 소장된 전체 당안 156만여권의 84%를 차지한다. 趙銘忠·李祚明 主編, 전계서, pp.3-5.

40) 내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본 주요 조직기구표(1928·10-1948·5)는 다음과 같다.

국민정부
 ||
 입법원·행정원·사법원·고시원·감찰원과 각종 위원회 및 중앙연구원, 국사관...
 ||

〈표 1〉 내정부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전종구성표

전종명칭	전종번호	안권수량
국민정부(총통부)(1927—1949)	1	11,541권(11,533)
행정원(1928—1949)	2	19,374권(15,910)
내정부(1928—1949)	12	28,401권(33,189)
내정부금연위원회(1938—1949)	41	743권(829)
내정부인구국(1947—1949)	278	1,867권(20,272)
내정부현시행정인원강습소(1936—1937)	222	292권(300)
地政署(部) (1942—1949)	36	2,303권(2,462)
위생부(署) (1928—1949)	372	1,151권(1,151)

출전: 『中國第二歷史檔案館簡明指南』, 당안출판사, 1987, pp.355-360. 안권수량 ()안의 수치는 1994년 개정된 『中國第二歷史檔案館指南』의 각 전종소개 부분에 의거하였다.

남경국민정부시기당안의 전종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기관별 층차는 매우 다양하다. 표에 다 수록하지는 못하였지만 위로 국민정부에서부터 입법원·행정원·사법원·고시원·감찰원의 五院과, 행정원에 소속된 내정, 외교 등 각 부와, 각 부에 소속된 각 局, 署(處), 司, 室, 그 밖에 각종 위원회와 사무소, 소속기구, 公司, 단위학교, 연구소, 실험소가 각각 하나의 전종을 구성하고 있다. 전종이론에 따르면 각 기관별 층차나 조직의 대소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직능을 행사한 조직기관의 경우 전종을 구성하는 입당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독립기관이든 그 내부기구든지간에, 자신의 명의로 외부에 대해 공문을 발행할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직능을 행사한다고 보며, 그렇다면 독립적인 입당단위로서 전종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전종의 구성이 주로 조직기관별로 이루어지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 조직기관의 독립적인 직능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즉 전종이론은 조직기관과 직능이 결합된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조직분류라면 기록이 남아 있는 모든 조직을 다 전종으로 잡아주어야 하지만, 조직과 직능이 결합된 분류체계이기 때문에 독립기관은 물론 그 내부기구이라도 독자적인 직능을 행사하는 경우 별도의 전종이 구성되는 것이다. 전종의 명칭이 조직기구의 명칭을 쓰고 있는 것도 조직기구의 명칭이 바로 직능을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급 고층영도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각각 별도의 전종을 구성함에 따라,

내정부·외교부 등 10-15개의 부와 신문국, 각종 위원회...

||

總務司(총무처), 民政司, 土地司(地政司), 警政司(경찰총서), 衛生司(衛生署), 禮俗司, 통계사(통계처), 호정사(내무부인구국), 회계처, 營建司, 方域司, 社會司, 勞工司, 合作司와 참사실, 비서실, 編審室, 시찰실, 기술실 및 각종 위원회와 부속기구...

출전: 韓文昌, 邵玲, 民國時期中央國家機關組織概況(中國檔案出版社, 1994), pp.221-225, pp.248-252, pp.278-285.

전종번호 1의 <국민정부(총통부)> 전종은 기본적으로 국민정부(혹은 총통부)의 명의로 발행된 당안들을 포함하되, 그 중에서도 <국민정부건설위원회, 전종번호 46>나, <국민정부주계처, 전종번호 6> 등 별도의 전종에 포함되지 않은 당안들을 포함하게 된다. <행정원> 전종 역시 소속 10-15부 및 각 위원회의 활동 가운데 생산된 당안을 포함하되, 그중 <행정원경제회의비서처, 전종번호 172> <행정원전국경제위원회, 전종번호 44> 등 별도의 전종에 포함되지 않은 당안들을 포함하게 된다. 이하 <내정부> 전종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만약 새로운 당안이 추가로 수집되거나, 새로운 전종이 구성되어 기존의 전종에서 일부의 당안이 분리되어 나간 경우 안권의 수량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위의 표에서도 1987년도와 1994년도의 안권수량이 다소 달라진 점이 확인된다.

이들 내정부의 내부기관중 <내정부금연위원회(1938—1949)>는 명칭과 소속기관이 바뀌고 업무의 내용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전종이 구성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내정부인구국(1947—1949), 전종번호 278>은 조직의 확대개편에 따라 새로운 전종을 구성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양자가 일반적인 전종구성의 처리방침에 어긋난다는 점은 전술하였다. 이와는 달리 <내정부縣市행정(인원)강습소(1936—1937)>는 존속된 기간도 16개월에 불과하고 남긴 당안의 수도 300권에 불과하지만, 독립적인 직능을 행사하는 신설기구였기 때문에 새 전종을 구성한 경우이다. <地政署(部)(1942—1949), 전종번호 36>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을 합병하여 새로운 기관이 성립되었으므로 새로운 전종을 구성한 경우이다. 이 양자는 일반적인 전종구성의 처리방침에 그대로 부합하는 경우이다.

남경당안관에는 이들 조직기관전종외에 풍옥상, 응희령, 장개석 등 동시기에 활약한 인물들에 대한 개인전종도 구성되어 있다. 이를테면 <蔣中正(1887—1975), 전종번호 3041>은 장개석의 개인전종이다. 그는 1928년 이후 남경국민정부의 주석, 행정원원장, 군사위원회위원장, 국민당중앙총재를 역임하면서 정권을 장악하였다. 장중정당은 1919-1946년까지의 187권의 당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①중산합사건에 관한 문건을 비롯한 공무에 관한 문건 ②손중산 등 각계 인사들과 주고 받은 편지와 전보 ③장중정 자신의 일기와 년보 및 전기, 원고 ④가족간의 편지 및 기타 문건들로 구성되어 있다.⁴¹⁾

장개석이 공식적으로 남긴 당안은 남경국민정부당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당연히 각 조직기구전종속에 포함된다. 전종구분의 원칙상 조직전종과 개인전종이 겹치는 경우, 조직적 속성이 강한 것은 조직전종에, 개인적 속성이 강한 것은 개인전종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⁴²⁾ 따라서 장중정의 개인전종은 그가 남긴 문건중에서도 비공식적으로(개인명의로) 남긴 문건들을 포함하며 주로 서신·전보, 일기·전기, 기타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전종을 구분할 때 원칙적으로 당안수량의 다소는 참고사항이지만 결정적인 필요조건은 아니다. 개인전종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여, 안권의 수량이 단 1권이거나 10권정도

41) 趙銘忠·李祚明 主編, 전게서, p.698.

42) 鄧紹興·陳智爲 主編, 전게서, pp.99-104.

불과한 인물전종도 다수 존재한다.

종합하면 남경당안관의 정리분류는 전종이론에 따른 당안분류론에 의거하고 있지만, 전술한 <북경정부전종회집>이나 <내정부>, 또는 <내정부금연위원회>, <내정부인구국>처럼 전종이론과 꼭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북경정부전종회집>의 경우는 예전부터 이미 양자를 합쳐 분류하였으므로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그 밖의 경우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아마도 일반적인 전종구분의 원칙외에 소장된 당안의 수량도 적당히 고려하였으며,⁴³⁾ 특히 역사당안의 경우는 역사적 중요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수요도 아울러 고려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IV. 맺음말: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를 위한 시사점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안의 정리분류는 서양의 푹 이론을 중국적 상황에 알맞게 적용시킨 것이다. 그런데 정리분류의 근거가 되는 전종이론은 서양의 푹 이론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한편으로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전종의 구성요소(입당단위)를 행정상·재무상·조직상으로 명시한 점이나, 일반적인 전종구분의 처리원칙을 열거하고 있는 점은 전종이론의 구체성을 보여준다. 반면에 독립전종 외에 연합전종·전종회집·당안회집과 같은 유사전종을 조직하여 실무에서 독립전종과 마찬가지로 활용하도록 한 점이나, 실제 전종구분의 과정에서 관행이나 역사기록물의 잔존수량, 역사적 중요성 등에 따라 전종을 확정한 점은 전종이론의 융통성을 반영한다. 즉, 원칙은 정하되 원칙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면, 아키비스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그 내용을 상급기구에 보고하고 상세히 기록해 놓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용적인 분류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역사당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중국의 정리분류 방법이 우리 역사기록물의 분류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점들이 지적될 수 있겠지만, 편의상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와 관련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역사기록물은 문건사이의 역사적인 연계나 분류방식 그 자체가 당시의 역사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원래의 정리결과를 충분히 존중하고 이용해야 한다. 원래 정리된 결과가 전체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효과적이라면 전체적으로 조정하거나 새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원래의 정리결과중 이용할 만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유지하고

43) 원칙적으로 당안의 수량은 전종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실제 각 당안관에서 전종을 구분할 때, 수량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何嘉蓀, 傅榮校 著, 전게서, p.195.

이용하여야 한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질서체계가 남아 있지 않아서 원래의 질서를 최대한 복원해내야 하는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경우⁴⁴⁾도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둘째, 전종이론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모든 기관과 개인, 그리고 사회활동분야가 모두 전종의 구성자(입당단위)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그중에서 조직기관전종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각급 각종의 사회조직기관이 전종을 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직능을 행사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하나의 독립기관이든 그 내부기구든지간에, 자신의 명의로 외부에 대해 공문을 발행할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직능을 행사한다고 보며, 그렇다면 독립적인 입당단위로서 전종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전종의 구성이 주로 조직기관별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그 조직기관의 독립적인 직능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즉, 단순히 조직분류라면 기록이 남아 있는 모든 조직을 다 전종으로 잡아주어야 하지만, 조직+직능분류이기 때문에 그중 독자적인 직능을 행사하는 몇 개의 조직만 전종이 구성되는 것이다. 전종의 명칭이 조직기구의 명칭을 쓰고 있는 이유는 조직기구의 명칭이 바로 직능을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전종이론이 조직기관과 직능이 결합된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전종의 구성요건이 기존의 조직기관 및 개인에서 점차 각종 사회활동항목(과학연구, 생산건설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이것은 전종의 구성요건이 기존의 출처중심에다가 기능중심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호주 등 서구의 분류이론이 상위구조는 조직출처로 나눈다고 해도 시리즈단위부터는 기능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추세라고 파악한다면, 전종이론은 전종단위에서부터 조직+기능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종을 구성하는 입당단위를 기관이나 그 내부조직, 이를테면 “部·局 단위나 혹은 課 단위”로 획일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조직구조와 독립적인 직능여부를 고려하여 전종을 확정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에 있어서도 모든 부·국 혹은 과 단위로 문서를 분류하기 보다는, 그들 조직이 대내외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행하였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행사한 조직기구를 하나의 분류단위로 묶어줄 필요가 있다.⁴⁵⁾

셋째, 남경국민정부도 그렇지만 조선총독부의 각 내부기구도 조직기구의 변동과 기능

44) 배성준,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체계의 복원을 위한 시론”,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심포지엄 겸 기초학문육성과제 중간발표회 발표문 근대 역사기록물의 분류와 조선총독부 문서(2003, 5), p.75. 기존의 조선총독부의 문서분류 양식에 관해서는 이경용, 한국의 근현대 기록관리제도사 연구(박사학위논문, 중앙대 대학원 사학과, 2002), pp.121-125, p.148. 박성진,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분류방식”, 기록학연구 제 5호(2002), pp.175-204 참조.

45)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능분류체계 개발에 관해서는 설문원,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위한 기능분류체계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 20권 1호(2003), pp.457-488. 설문원,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위한 기능분류체계 개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심포지엄 겸 기초학문육성과제 중간발표회 발표문 근대 역사기록물의 분류와 조선총독부 문서(2003, 5) pp.96-131에 상세하다.

및 사무분장의 변화가 적지 않다. 어떤 경우에 새로운 전종을 잡아주고 어떤 경우는 하나의 전종으로 묶어 둘 것인가? 전종구분의 일반적인 처리원칙인 “기본적인 직능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기준은 이런 경우에 유용하다. 사실 현행당안의 경우는 조직기관이 계속 변동하고 문건이 계속 생산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보관관리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전종을 지나치게 세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당안의 경우는 조직이 이미 폐지되었고 생산된(혹은 남아있는) 기록물의 수량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기관전종을 구성하는 것이 비교적 융통성이 있다. 중국에서 역사기록물의 조직기관전종을 구분할 때에는 전종구분의 일반원칙 외에, 남아있는 당안의 수량이나 사안(직능)의 역사적 중요성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역사기록물의 경우 전종에 소속된 당안의 수량이 너무 적거나, 당안의 입당단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입당단위는 분명하지만 생산된 당안을 나누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 데, 이들을 전종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연합전종·전종회집·당안회집과 같은 전종의 보충형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물론 만약 차후에 관련 기록들이 더 수집된다면 해당부분을 독립시켜 별도의 전종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조직기관전종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사문서가 수집된다면 개인전종(인물전종)을 구성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